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덕준 의원)

의안 번호	19-168
----------	--------

발의년월일 : 2019. 11. .

발 의 자 :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영미, 정혜경

## 1. 개정이유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지명 방법을 개정하고 위원회 임기 규정(2년) 반영(안 제4조)
- 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8조)
- 라. 위원의 제척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4. 입법예고 : 2019. 11. 21.~11. 25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8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를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 중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를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술이나 감정”을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를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5의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6. (생략)</p>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7조</u>----- ----- ----- ----- -----.</p> <p>제3조(기능) ----- ----- ----- -----.</p> <p>1. ~ 5의2. (현행과 같음)</p> <p>6. <u>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u></p> <p>7. <u>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u></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u> -----</p>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③ -----  
-- 2년-----  
-----.  
-----  
-----  
-----.

제8조(위원의 해촉) -----  
-----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생략)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신 설>

4. (생략)
- ②·③ (생략)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  
-----.

1. -----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

2. (현행과 같음)

3. -----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